

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15] <개정 2015.3.25.>

허가 또는 등록의 수수료(제50조 관련)

구 분	신 규	변 경
1.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	10,000원	5,000원
2.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	30,000원	15,000원
3. 처리시설 설계·시공업의 등록	23,000원	14,000원